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對이란 제재 재부과

| 외부 필진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동찬 변호사 | Yulchon LLC

목차

1. 재부과되는 對이란제재의 구체적 내용	03
2. 이란 사업의 철수 방안	09
3. 향후 유의 사항	10



변호사 신동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 5. 8.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2015년 7월 14일,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ermanent Members of UN Security Council) 5개 나라와 독일(이른바 P5+1)과 이란 간에 체결된, 이란은 국제사회가 제기한 핵의혹 해소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핵사찰 등을 수용하고, 미국과 EU 등은 이란의 핵의혹을 이유로 이란에 부과하였던 경제 제재를 해제하거나 유예하여 주기로 하는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을 통하여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등에 JCPOA에 따라 해제되었던 제재를 재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체결된 JCPOA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공공연히 JCPOA에서 탈퇴할 것임을 천명하여 오다가 지난 1월에는 5월까지 자신이 요구한 JCPOA의 개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의무가 10년으로 만료되는 JCPOA를 영구적인 협정으로 변경하고, 이란의 핵 의심 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찰, 그리고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제한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JCPOA에 따른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유예를 지속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였고, 결국 이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JCPOA에 따라 유예되었던 미국의 對이란 제재는 90일 내지 180일의 철수 기간(wind-down period)을 거쳐 모두 부활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JCPO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급하였던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와 특별 라이선스(Specific License)를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로서는 JCPOA에 따라 이란에서 적법하게 진행하였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부과되는 對이란 제재에 저촉된다면 철수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이를 종료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재부과되는 對이란제재의 구체적 내용¹⁾

가. 2018. 8. 6. 이후 재부과되는 제재(철수 기간 90일)

- 90일의 철수 기간이 종료되는 2018. 8. 6. 이후 재부과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화 은행권 매수 내지 취득에 대한 제재
 - 이란의 금 기타 귀금속 무역에 대한 제재
 - 흑연,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 원자재 내지 반가공 금속 및 제조 공정 통합 소프트웨어의 이란으로부터 또는 이란으로의 직·간접적 판매, 공급, 이전에 대한 제재
- 위 세 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이란과 이란이 물물교환, 기타 교환 또는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란의 국가대차대조표에 이란 정부의 자산으로 등재한 특정 물품(흑연, 알루미늄, 철 등 금속 및 반가공 금속, 석탄 및 제조 공정 통합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1)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OFAC이 2018. 5. 8. 발표한 재부과될 제재와 각 제재의 경과기간에 관한 질의 응답(FAQ)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특정 물품이 (i)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분야 또는 이란의 이슬람Islamic 혁명 수비대(Revolutionary Guard Corps, 이하 “IRGC”)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 분야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미국 재무부 OFAC이 지정하는 특정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에 의해 판매, 공급, 이전되거나, 이란의 핵, 군대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ii) 해당 물품이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분야 또는 IRGC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 분야의 최종 소비자, SDN 또는 이란의 핵, 군대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재판매, 재이전 또는 달리 공급된 경우, 이러한 특정 물품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 또한 다음의 제재들도 2018. 8. 6.부터 부활합니다

 - 이란 리알화 매매와 관련한 상당한 거래 또는 이란 영토 밖에서 이란 리알화로 표시된 상당한 자금의 보유 또는 그러한 계좌의 유지에 대한 제재
 - 이란 정부 발행 채권의 매수, 청약 또는 채권 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 이란의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
- 이란의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는 알면서(knowingly) 이란의 자동차 업계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상당한(significant)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란의 자동차 업계에는 승용차, 트럭, 버스, 미니버스, 픽업트럭,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란 내 차량 제조 및 조립, 차량 제작용 장비 및 정비용 부품의 제조 업체가 포함됩니다(미국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하 “EO”) 제13645호 제14(a)조).
-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란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는 자동차 관련 물품의 리스트나 자동차 생산 회사의 리스트는 별도로 공표되지 않았으나, 과거 OFAC이 발표한 FAQ 제311항에는 (i) 이란의 차량 연구, 개발, 생산 및 조립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 (ii) OEM 방식의 생산 및 조립, 이란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부품의 생산 및 조립을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의 수출은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나, 현지 조립을 위한 부품 판매, 공급, 이전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고(FAQ 316항), 완성차의 정비를 위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공급, 이전은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란의 차량 생산, 조립, 및 장비/부품 제작 능력에 기여하는 경우 제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FAQ 317항).

- JCPOA에 따라 발급된 다음 라이선스는 2016. 8. 6. 이후 철회되므로,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허용되었던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란이 원산지인 카페트, 식료품 및 이와 관련된 특정 금융 거래에 대한 일반 라이선스
 - 여객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용역의 이란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 관련 활동에 대한 특별 라이선스
 - 여객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용역의 이란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 관련 활동과 관련한 부대 계약에 관한 일반 라이선스

나. 2018. 11. 4. 이후 부과되는 제재(철폐 기간 180일)

- 180일의 철폐 기간이 종료되는 2018. 11. 4. 이후 재부과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란의 항만 운영자, 선박 및 조선 부문에 대한 제재(IRISL, South Shipping Line Iran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 포함)
 - National Iranian Oil Company(NIOC), Naftiran Intertrade Company(NICO),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NITC) 등과의 석유관련 거래(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구매 포함)에 대한 제재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이란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n) 및 2012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이하 "NDAA 2012") 제1245조에 따라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제재
- NDAA 2012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에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외국 금융기관들로서 이란 중앙은행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FFI")의 경우에는 해당 원유 수입국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을 상당히 감축(significant

reduction)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FFI를 제재하지만, 만일 해당 원유 수입국이 180일마다 전(前) 반년의 원유 수입량보다 20% 정도를 감축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감축한 것으로 보아 NDAA 2012에 따른 예외국 지위를 인정하여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판매수입을 감축하는 압박을 가하여 이란을 핵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의 NDAA 2012에 따른 이러한 제재를 이란 및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온 우리나라 같은 이란과의 교역국 모두에게 경제적 출혈을 강요하는 정책이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줄어드는 물량이나마 끝이 보이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지속할 수 있게끔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과의 교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의 유지를 위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이란으로부터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고, 이란에서 원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이란중앙은행은 동 원유 판매대금을 우리나라의 우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며, 이란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은 우리나라 상품의 구입대금을 거래하는 이란은행에 송금하면, 동 이란은행은 우리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 한국 상품의 대금 등이 입금되었음을 통보하여 주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한국과 이란 간의 원화결제계좌 시스템이 2010. 10. 1.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원화결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 원화가 계속 쌓여 있어야 하며, 결국 이는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수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NDAA 2012를 시행하여 원화결제계좌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한국과 이란 간의 교역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NDAA 2012와 같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에 견디지 못한 이란이 P5+1과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으로써 2014년 11월 20일 이란과의 잠정 합의인 공동 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이 체결되어 그 때까지의 원유 수입량 감축 수준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였고, 2015년 7월 14일 JCPOA가 타결됨으로써 2016년 1월 16일의 JCPOA의 이행일(Implementation Day)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은 다시 자유롭게 재개되었기에, 우리나라와 이란 간의 원화 결제계좌도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 5. 8.에 이란 핵합의 탈퇴를 발표하면서 NDAA 2012에 따른 제재를 부활한다고 하였을 때 대체적인 관측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국들에게 미국이 요구하였던 원유 수입량 감축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예상이 무색하게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을 11월 4일까지 0으로 줄일 것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도 NDAA 2012에 따른 예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금융 부문 자체가 이란의 핵개발, 테러리즘 지원, 중동에서의 지역 불안정 야기 등의 행태에 깊숙이 관여하여 왔다는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있어 이란 금융 기관들과 어떠한 거래를 하더라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NDAA 2012에 따른 예외국 지위를 어느 나라에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원화결제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와 이란 간의 교역도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더 이상 원유 수입을 못하게 되고, 이를 지속할 경우 NDAA에 따른 우리나라의 FFI(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제재가 부활하는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비제재 부문(예컨대 가전제품과 휴대폰 등)의 이란으로의 수출도 모두 막히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위와 같은 공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미국과 수차 협의를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 외에도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인도, 중국, 일본 등)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과연 예외국을 어느 나라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지 여부는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2018. 11. 4.부터 부활하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란중앙은행 및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전신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재(포괄적 대이란 제재법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제104(c)(2)(E)(ii)조)
 - 증권 인수, 보험, 재보험의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

 - 아울러, 미국인 소유 외국법인의 이란과의 거래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였던 일반라이선스도 2018. 11. 4. 이후 철회되므로,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진행하였던 사업 및 활동도 금지됩니다.

 - 또한, OFAC은 2016. 1. 16. JCPOA 에 따라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등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에 대한 제재 역시 2018. 11. 5.이전에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2. 이란 사업의 철수 방안

- 미국인이 아닌 자는 ① 2018. 5. 8. 이전에 문서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② 계약 이행이 JCPOA에 따라 적법한 것이었을 경우, 철수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란에 대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 이행을 모두 마친 경우, 철수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① 2018. 5. 8. 이전에 문서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대출 또는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② 대출금 제공 또는 신용 공여가 JCPOA에 따라 적법한 것이었을 경우, 철수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약에 따라 이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금 수령 및 대출금 상환 등의 과정에서 미국인 또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관여하여서는 안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2018. 5. 8.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철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對이란 제재 법령에 반하여 이란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철수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란과 새로운 거래를 개시하는 것은 對이란제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유의 사항

-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JCPOA의 당사국들은 미국의 JCPOA 탈퇴에 반대하고 있고, 이란 역시 JCPOA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후속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철수 기간 내에 관련 JCPOA 당사국들 사이에 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제재가 재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란 진출을 검토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對이란 제재가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또한 NDAA 2012에 따른 제재 재부과에 따라 이란 교역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적절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중소기업들로서도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對이란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란에서의 사업을 철수하여야 할 경우 對이란 제재에 따른 위험 및 이란 당사자와의 분쟁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